

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

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○ 공고기간 : 2024.03.19. ~ 2024.04.01.

○ 대 상 자 (인적사항)

일련 번호	성 명	면허번호	취소처분 효력개시일
1	이*	서울 20-6348**-**	2024.03.05. (2024-000103)

공고일 : 2024년 03월 19일

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